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801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6월 18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80% 감면 혜택을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전체 대상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 본인은 물론 유족 및 가족에게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유족 및 가족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만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동 개정조례안의 제7조제1항제1호나목·다목·마목 등을 현행으로 함
(안 제7조제1항제1호 나목·다목·마목)
- 나.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신설(안 제7조제1항제1호의2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나목, 다목, 마목 및 같은 항 제13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제1호에 바목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로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, 주차시간측정기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	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3호·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	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	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<u>고엽제후유의증환자</u>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. (생략) 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독립유공자</u>로서 <u>독립유공자증</u>을 제시한 사람 <신설>	다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엽제후유의증환자</u>와 <u>그 유족 또는 가족</u>----- -----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----- ----- <u>독립유공자</u>와 <u>그 유족 및 가족</u>으로서 <u>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</u> --. 바. 「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<u>참전유공자</u>와 <u>그 유족 또는 가족</u>으로서 <u>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</u> <신설>	다. (현행과 같음)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(현행과 같음) <삭제> 1의2. 「<u>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<u>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</u>로 <u>독립유공자 유족증</u>을 제시한 사람의 경우 <u>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.</u>
2. ~ 10. (생략) 11. • 12. 삭제	2. ~ 10. (현행과 같음)	

13. 「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. 14. · 15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<삭제> 14. · 15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13. (현행과 같음) 14. · 15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	---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로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주차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, 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	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1의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로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2. ~ 15. (생략)	2. ~ 15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